

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

1. 응모원서에는 응시자 본인이 서명(전자메일 제출 시 생략 가능)하여야 합니다.
2. 응모원서 작성 시 응모자 부주의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3. 응모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① “접수번호” 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
 - ② “응모분야” 란에는 전문분야(건축계획, 도시설계, 건축구조, 방재, 환경, 조경, 토질 및 기초, 건축시공)를 택일하십시오.
 - ③ “학력” 은 출신대학교부터 작성하시되, 전공학과와 학위명(학사, 석사, 박사)을 정확히 기재하시고, 현재 학위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, 수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 - ④ “자격사항” 중 운전면허, 기사 및 교사 자격증 등은 기재하지 마십시오.
 - ⑤ “주요경력” 은 공직 또는 사회(실무)경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반드시 A4 2매(이내)로 작성합니다.
 - ㉠ 워드프로세서 또는 수기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.
 - ㉡ 그동안의 근무·연구활동 및 실적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 - ㉢ 자유기술서(선택사항)를 포함 작성분량 및 형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-135호

도시관리계획(승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공고

- 종로구 송인동 207-3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-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207-32번지 외 7필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(승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9년 1월 17일
서울특별시

I. 열람 기간 : 2019. 01. 18. ~ 2019. 01. 31. 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)

II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팀 (☎02-2133-6298)

III. 도시관리계획(승인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기정	-	승인 지구단위계획 구역	종로구 송인동 200-16 일원	218,280 (855)	-	218,280 (855)	서고 제2004-444호 (2004.12.30.)	-

※()은 사업대상지 면적임.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	면 적(㎡)			구 성 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상업 지역	소계	855	-	855	100.0	-
	일반상업지역	855	-	855	100.0	-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건축물의 용도계획

구분			전층지정용도	불허용도(전층)	비고
기정	이면부	C-1	●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	●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제외) ●의료시설 중 격리병원	송인동 207-32번지 외7필지
변경	이면부	C-1	●공동주택(주거복합)주 ※ 단, 지하1,2층, 지상 1,2층 비주거용도 설 치 가능	●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●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●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●장례식장 ●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●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●교정시설 ●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●공장 ●업무시설(공공업무시설 제외)	송인동 207-32번지 외7필지

주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의한 “공공임대주택” 이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의한 “민간임대주택” 에 한하며, 준주택(오피스텔) 및 단 기임대주택 제외

☐ 결정사유서

구분	결정내용	결정사유
변경	• 지정용도, 불허용도 변경	•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동주택(주거복합)을 지정용도로 결정 • 청년주택 조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 등의 도입을 막기 위해 불허용도로 결정

나. 건축물의 개발밀도계획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	비고	
			기정	변경		
B8-A	종로구 송인동 207-32외 7필지	건폐율		●60% 이하		
		용 적 률	기준용적률	●500% 이하	-	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 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
			기본용적률	-	●900% 이하	
			허용용적률	●960% 이하 ¹⁾	-	
			상한용적률	●1,000% 이하	●법적용적률 이하	기본용적률 x (1 + 1.3a) x 가중치
		높이		●55m 이하		

※ 상한용적률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

☐ 결정사유서

구분	결정내용	결정사유
변경	• 개발밀도계획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변경	• 현재 관광숙박시설로 사용중인 사업대상지의 건축물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(주거복합)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」에 따라 변경함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신설)조서

가.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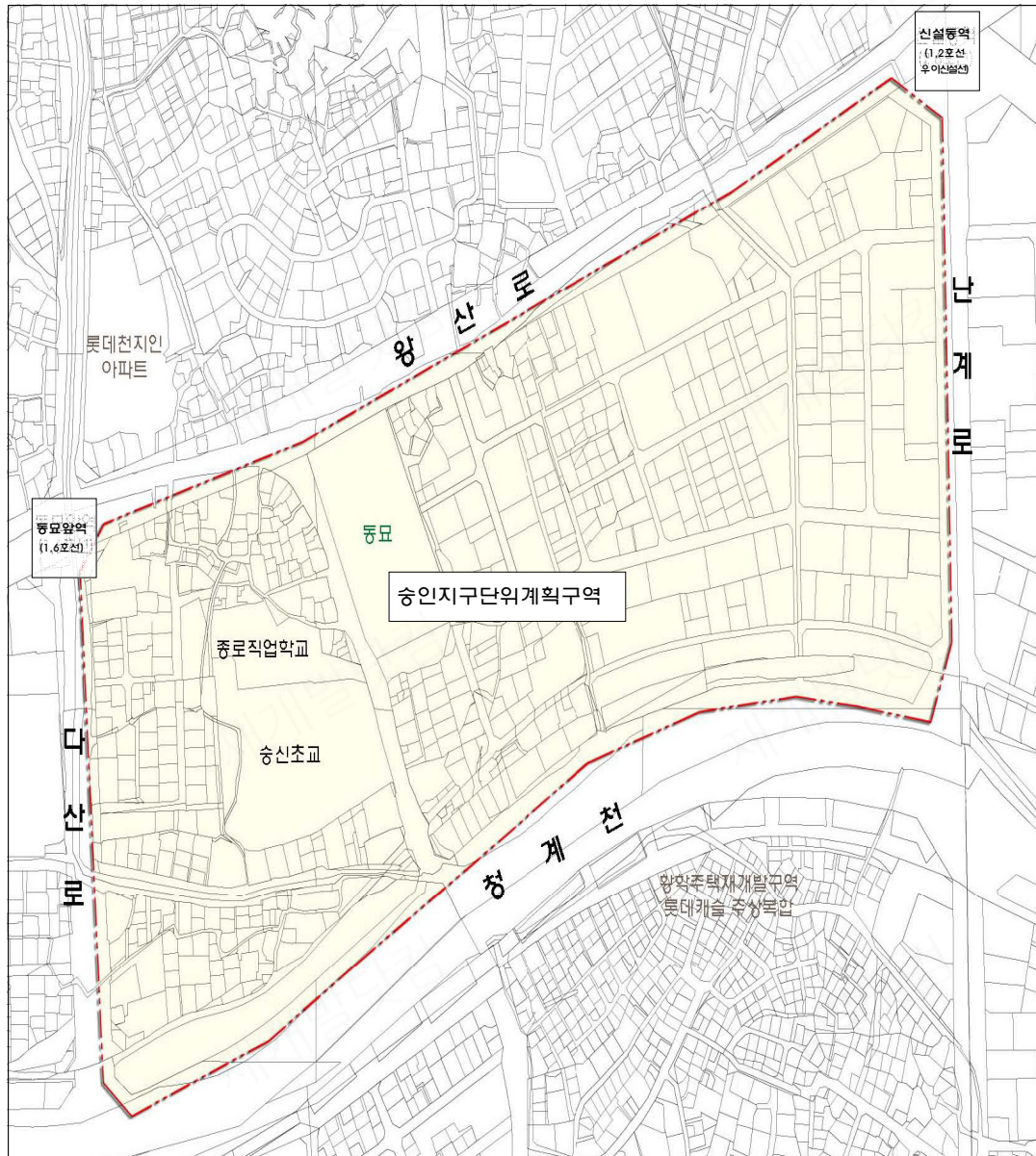
1) 공공임대주택

구분	건축연면적	기부채납 내용	총 제공면적	비고
공공임대주택	980.13㎡	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	102.70㎡	부지면적의 12.0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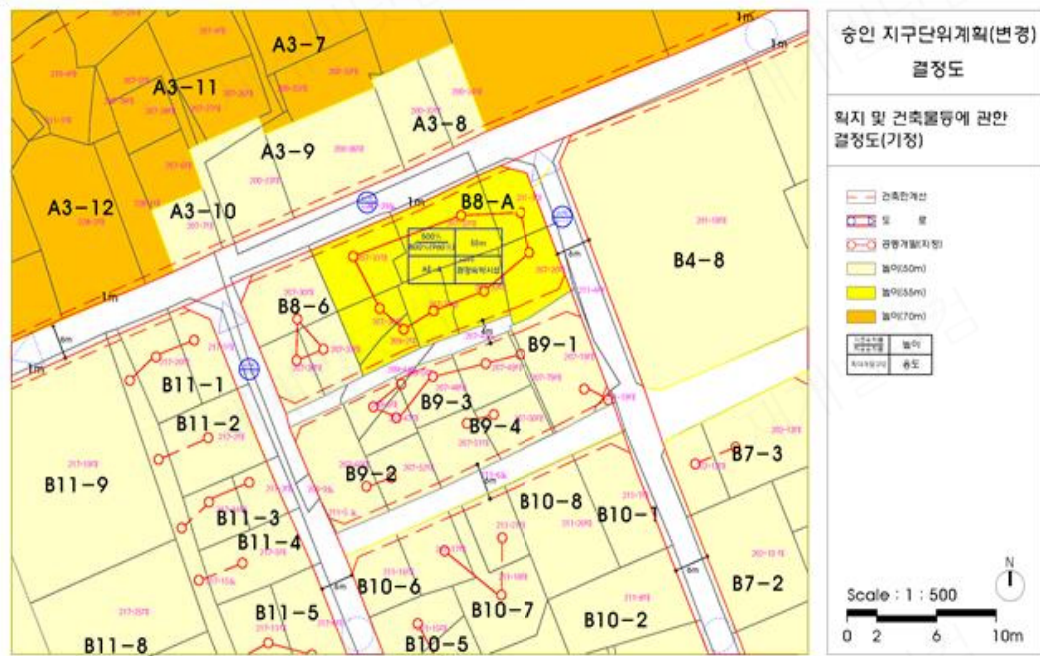
※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,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

IV. 관계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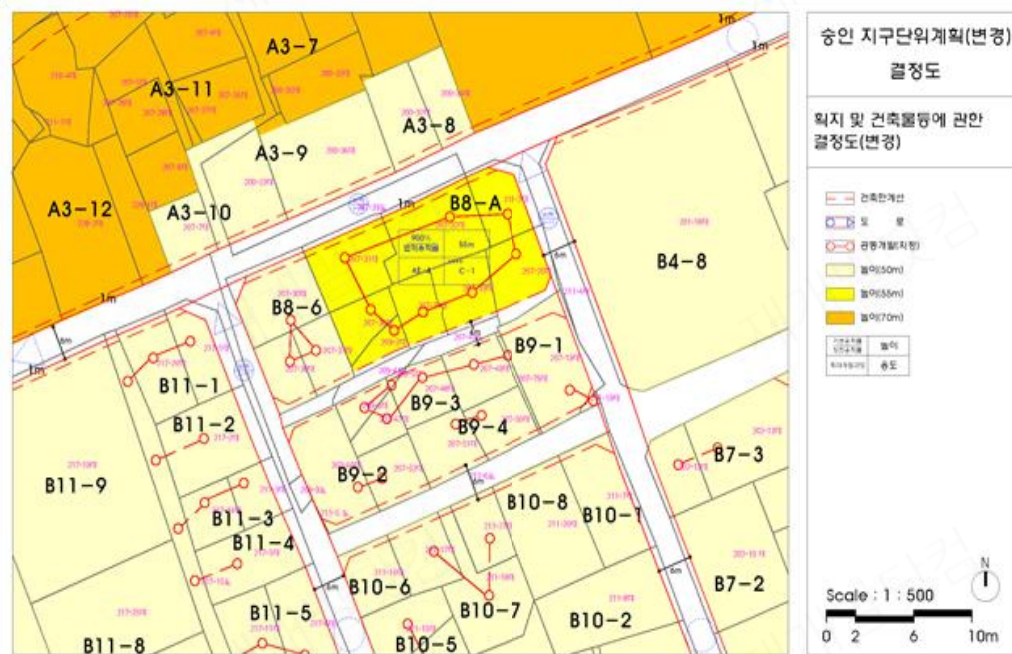
■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: 변경없음



■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(안)



V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